

##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기관추천 특별공급(4세대) - 84㎡B : 2세대 / - 83㎡C : 2세대

구분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대상	구성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관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처 경남 서부지방보훈지청 복지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자격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세대군인 (10년 이상)	10년 이상 복무 군인	「중고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청약 통장	무관		6개월 경과 및 해당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청약가능 면적	전용면적 85㎡이하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 / 9억원 초과 주택 제외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li> <li>◎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확정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신청 하여야 함.</li> <li>※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후수 배정) 및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 (타 특별공급 집행세대에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기회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창군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가 우선함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